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올림픽
회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42호,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나.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설정(제22조의2 신설)

1)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제22조의2제1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를 1) 국제올림픽위원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함.

2)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의2제2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3)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제22조의2제3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
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함.

4) 수의계약 시 계약 규모(제22조의2제4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5) 수의계약 시 계약 절차(제22조의2제5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6) 수의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의무(제22조의2제6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란 아래 각 호의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를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상품(성능·수량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⑥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대한올림픽위원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u>대한올림픽위원회</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u>대한올림픽위원회</u>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대한체육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u>대한체육회</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u>대한체육회</u>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u>< 신 설 ></u>	<u>제22조의2(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u>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란 아래 각 호의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를 말한다.

	<u>1. 국제올림픽위원회(IOC)</u> <u>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u> <u>3.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u> <u>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u> <u>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u>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u> <u>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u> <u>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 <u>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u>
--	--

	<u>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u> <u>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u> <u>⑥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44